

의안번호	2202109
의 퇴 인	김재원의원
회 답 일	2024. 8. 20
추계번호	24C227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자문위원 수당, 조사보고서 작성·발간 경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5,200만원, 2029년 1억 5,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4억 600만원(연평균 6억 200만원) 이상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의 설치 (안 제6조)	412	412	412	0	1,236	309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및 소위원회(안 제17조)	300	300	300	0	900	225
자문기구의 설치(안 제19조)	40	40	40	0	120	30
조사보고서 발간(안 제38조)	0	0	0	150	150	38
계	752	752	752	150	2,406	602

주: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 회의수당은 실제 위원회의 운영 기간 및 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2. 자문위원 수당은 자문위원 수 및 회의개최 횟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의 설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의 인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안 제17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다음의 소위원회를 둠 - 진상조사 및 피해자인정 소위원회 - 제도개선 및 피해자지원 소위원회 - 조사보고서 발간소위원회	의무규정
3	안 제18조(위원회 지원부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위원회 지원부서를 두도록 하고, 지원부서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의무규정 재량규정
4	안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29조(지원의 원칙)~안 제3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창작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창작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의무규정 재량규정
6	안 제38조(조사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경과,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하고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의 설치)	○	
2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안 제17조(소위원회)	○	
3	안 제18조(위원회 지원부서)	X	지원부서 인원 및 전문위원 채용 규모의 경우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4	안 제19조(자문기구의 설치)	○	

5	안 제29조(지원의 원칙)~안 제36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X	피해자의 수 등을 현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워 국가등의 재정적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 곤란함
6	안 제38조(조사보고서 발간)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조사위원회 사업비, 위원회 회의 운영 수당, 자문위원 수당 및 조사보고서 발간 경비로 한정하여 추계함

- 위원회 지원부서 관련 인건비와 전문위원 운용(안 제18조) 규모 등은 현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워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에 따른 창작환경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금은 피해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현시점에서 알 수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제정안 부칙 규정과 시행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 3월까지 4년으로 함

- 안 제10조¹⁾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조사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추계 종료 연도는 2029년 3월로 함

— 조사위원회가 최초 구성이 2026년 1월에 이루어지고, 2028년 12월까지 총 3년간 활동을 하며, 활동 종료 이후 2029년 3월까지 3개월간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1) 제10조(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38조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발간을 위한 활동을 한다고 가정

- 3년 활동 종료 이후 회의수당과 별도의 사업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 제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피해자의 인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사무실 설치·운영비, 회의·토론회 진행비, 여비 등(이하 “기타운영비”라 함)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부분을 여기에서 추계하고, 이하에서 위원회 회의수당은 별도로 구분하여 추계함
- 2017년 7월 말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운영(1개월 준비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운영기간은 10개월, 이하 추계시 동일하게 적용)된 문체부 훈령²⁾을 근거로 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매년 동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
- 기타운영비: 월별 평균 운영비(343백만원 ÷ 10개월) × 12개월
 - 34.3백만원 × 12개월 = 412백만원

[표 2] 위원회 기타운영비 추계: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합계
기타운영비	412	412	412	1,2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여비 등 기타운영비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각각 연간 4억 1,200만원, 총 12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및 소위원회(안 제17조)

- 제정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3개의 소위원회(진상조사 및 피해자인정 소위원회, 제도개선 및 피해자지원 소위원회 및 조사보고서 발간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7월 말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운영된 문체부 훈령을 근거로 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전원위 및 소위 운영횟수를 가정
 - 회의수당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³⁾에 따르면 2017년~2018년 당시와 지급기준에 있어 변동이 없음

[표 3] 2017년~2018년 조사위 회의운영 횟수 및 수당 지급 내역

구분	위원수 (명)	운영횟수 (회)	회의수당 (백만원)	비고
전원위원회	21	39	123	
진상조사소위	13	44	86	
제도개선소위	12	19	34	
백서발간소위	4	12	7	
합계		114	2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본 추계에서는 기존 조사 사례와 동일하게 회의 개최 횟수를 가정하고, 제정안에 따른 연간 회의수당을 역산하여 산출함
 - 회의수당: 월별 평균 수당 지급액(250백만원 ÷ 10개월) × 12개월
 - 25백만원 × 12개월 = 3억원

3) 위원회 참석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 내(서면심사 100,000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표 4] 위원회 회의수당 추계: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합계
회의수당	300	300	300	9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 회의운영을 위한 수당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억원, 총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다. 자문기구의 설치(안 제19조)

- 제정안은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자문위원 정수와 회의 횟수 등을 준용하여 총 40명의 자문위원을 두고 연 4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수당 지급단가는 회당 25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자문기구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각각 4,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자문기구 설치에 따른 자문수당 추계: 2026~2028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자문수당(250,000원*40명*4회)	40	4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조사보고서 발간(안 제38조)

- 제정안은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정리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기존 조사 사례에서는 본서 4권 총 1,742쪽, 부록 6권 4,868쪽으로 종합 보고서를 포함한 백서를 발간(본서 1,500세트, 부록 700세트, 책함 제작비 및 발송비 포함)하였고, 예산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으로 기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사례의 10개월 대비 3.6배이나, 문체부 문의 결과 보고서 발간 적정 예산은 3배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보고 있어 해당 금액으로 추계함
 -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고 활동 종료 후 보고서 발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표 6] 위원회 보고서 발간 비용 추계: 2029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보고서 발간 비용	0	0	0	1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정리하여 국회의장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 1억 5,000만원으로 추계됨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동 추계 결과는 위원회 지원부서 관련 인건비와 전문위원 운용에 따른 비용 지출, 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에 따른 창작환경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결과로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